

2022년 제11차 이사회 회의록

- 일시 : 2022. 12. 30.(금) 15:00
- 장소 : T&S빌딩 5층, 학교법인 동원육영회 회의실

학교법인 동원육영회

학교법인 동원육영회(한국외국어대학교)

2022년 제11차 이사회 회의록

- | |
|------------------------------|
| ○ 이사회 소집 통보일 : 2022. 12. 21. |
| ○ 이사 정수 : 9명(재적이사 7명) |
| ○ 감사 정수 : 2명(재적감사 2명) |

1. 일시 : 2022년 12월 30일(금) 15:00~16:40

2. 장소 : T&S빌딩 5층, 학교법인 동원육영회 회의실(서울 중구 서애로 33)

3. 임원 참석 현황

- 참석 이사 : 김종철, 김동건, 김호정, 박정운, 양인집, 이돈구, 최명호
- 불참 이사 : 없음
- 참석 감사 : 윤규섭, 배한영
- 불참 감사 : 없음

4. 안건

가. 심의안건

- (1) 한국외국어대학교 교원 임용(안)
- (2) 사이버한국외국어대학교 교원 임용(안)
- (3) 사이버한국외국어대학교 성과급제 규정 제정(안)
- (4) 사이버한국외국어대학교 보수 규정 개정(안)
- (5) 한국외국어대학교 교육용 고정자산(차량운반구) 폐기(안)
- (6) 교육용 기본재산(토지) 용도변경(안)
- (7) 학교법인 정관 개정(안)
- (8) 이사회 회의록 간서명 대상자 선임(안)

나. 보고사항

- (1) 한국외국어대학교 2022년 단체협약 관련 보고
- (2) 수익용 기본재산 사방사업 토지사용 승낙 요청 보고
- (3) 수익사업체 민원 검토 결과 보고

간인(서명)

김종철



이돈구

5. 성원보고 및 개최선언

- 김종철 의장(이사장)이 성원 보고를 요청하다.
- 이에 이태욱 법인사무처장이 재적이사 7인 중 7인 참석으로 사립학교법 및 학교법인 정관에 의거 이사회가 적법하게 성원 되었음을 보고하다.
- 이어 김종철 의장이 학교법인 동원육영회 2022년 제11차 이사회 개최를 선언하다.

6. 전회 이사회 회의록 승인

- 김종철 의장이 전회 회의록 보고를 요청하자, 이태욱 법인사무처장이 보고한 후 이의 없음을 확인하고 참석이사 전원 찬성으로 전회 회의록을 승인하다.

7. 회의내용

가. 심의안건

(1) 한국외국어대학교 교원 임용(안)

- 김종철 의장 : 제1호 안건을 상정하고, 보고를 요청함.
- 윤성우 교무처장 : 한국외국어대학교 2023학년도 제1학기 교원 임용사항으로 재임용 내국인 20명, 재임용 외국인 49명, 승진임용 내국인 10명, 승진임용 외국인 2명, 고속승진 내국인 2명, 고속승진 외국인 6명, 조기정년보장 내국인 1명, 해임 21명(외국인 10명 포함) 등의 임용사항을 각각 제청함. 특이사항으로 해임 대상자 중 교원은 임용 만료일 2개월 전까지 재임용 여부를 통지해야 하는 상위 법령에 따라, 재임용 조건 미충족으로 해임을 통지하고자 하며, 다만, 임용 만료일(2023.02.28.)까지 재임용 조건을 충족할 경우는 재임용을 승인하고자 함.
- 최맹호 이사 : 교원 평가시 논문에 대한 정량적 평가(논문편수) 이외 피용인 지수를 반영하는 등의 평가방법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며, 향후에는 정년보장, 고속승진 등은 단순 논문 게재 여부 뿐만 아니라 피용인 지수 관련 지표

간인(서명)	김종철		이태욱
--------	-----	---	-----

도 같이 제출하도록 요청함.

- 이어 임원들이 숙의한 후 김종철 의장이 제1호 안건에 대한 승인 여부를 묻자, 참석이사 7인 전원이 찬성하여 다음과 같이 승인·의결하다.

□ 한국외국어대학교 교원 임용 의결사항

- 1. 승인 여부 : 원안 의결(불임, 승인 명단 참조)
- 2. 조건부 해임 : 교원은 2023.02.28.자로 해임(계약만료)하되, 임용 만료일(2023.02.28.)까지 재임용에 필요한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는 재임용을 승인함.

* 불임 : 한국외국어대학교 교원 임용 승인 명단

(2) 사이버한국외국어대학교 교원 임용(안)

- 김종철 의장 : 제2호 안건을 상정하고 보고를 요청함.
- 정현혁 교학처장 : 사이버한국외국어대학교 2023학년도 제1학기 교원 임용 사항으로 재임용 외국인 6명, 해임 내국인 1명의 임용사항을 각각 보고하고 승인을 요청함.
- 이에 대해 임원들이 숙의한 후 김종철 의장이 제2호 안건에 대한 승인 여부를 묻자, 참석이사 7인 전원이 찬성하여 다음과 같이 원안을 승인·의결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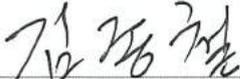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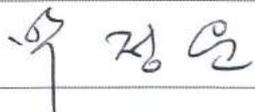
□ 사이버한국외국어대학교 교원 임용 의결사항

- 승인 여부 : 원안 의결(불임, 승인 명단 참조)

* 불임 : 사이버한국외국어대학교 교원 임용 승인 명단

(3) 사이버한국외국어대학교 성과급제 규정 제정(안)

- 김종철 의장 : 제3호 안건을 상정하고 보고를 요청함.
- 최서연 기획처장 : 사이버한국외국어대학교는 조직 운영의 효율성을 극대화하고, 성장의 발판을 마련하기 위해 정규직 직원의 성과급제를 도입하고자 하며, 이에 따라 성과급제 시행을 위한 성과급제 적용 대상, 성과급여 산정

간인(서명)			
--------	---	---	---

기준, 이의신청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을 설명함.

- 성과급제 규정(안) 주요 내용

- 성과급제는 정규직 직원을 대상으로 함(안 제3조)
- 성과급여를 결정하기 위한 정기 평가는 '직원근무성적평정시행지침'에 따름(안 제5조)
- 성과급여 총액은 최초 시행 학년도 성과급제 적용 대상 직원 1호봉 차액의 총액으로 함(안 제7조 1항)
- 성과급여, 평가등급, 평가지표, 인원비율 등은 총장이 별도로 정함(안 제7조 2항)
- 성과급여는 정기평가 결과에 따라 차등 지급하고, 정기평가 대상기간 차년도 2월 급여일에 지급함(안 제8조)
- 성과급여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 성과급여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이의 신청할 수 있음(안 제10조)

○ 이어 임원들이 다음과 같이 토의함.

- 성과급여 제도를 조기에 정착시키고 능률 향상 목적을 극대화하려면 성과급의 재원을 1호봉 삭감액에 더불어 학교에서 추가 재원을 마련하여 성과급 규모를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성 있음.
- 성과 평가방법, 등급별 인원비율, 지급액 등 중요사항이 규정에 반영되지 않았음을 지적하고 추후 보완하도록 요청.
- 최초 시행은 6천8백만원의 예산을 재원으로 한다고 되어 있지만, 향후 직원들의 호봉 및 임금이 인상되면 성과급 규모도 증액되어 학교 재정에 부담 요인은 없는지 시뮬레이션 등 면밀한 검토 요망.

○ 이어 김종철 의장이 이사들의 의견을 수렴한 결과, 직원 성과급제 도입에 원칙적으로 동의하고, 다만, 성과평가 방법, 등급별 인원비율, 지급액 등 중요 내용이 일부 반영되지 않았으므로 추후 보완을 전제로 조건부 승인하겠

간인(서명)	김종철		박정수
--------	-----	---	-----

음을 묻자, 참석이사 7인 전원이 찬성하여 승인·의결하다.

□ 직제규정 개정 승인사항

- 승인여부 : 조건부 승인
- 승인조건 : 성과평가 방법, 등급별 비율, 지급액 등을 보완하기 바람.
- 시 행 일 : 2023년 3월 1일

붙임 : 사이버한국외국어대학교 성과급제 규정 전문

(4) 사이버한국외국어대학교 보수 규정 개정(안)

- 김종철 의장 : 제4호 안건을 상정하고 보고를 요청함.
- 최서연 기획처장 : 사이버한국외국어대학교 직원 성과급제를 도입하고자 관련 내용을 명시하고, 2023년도 기본급 0.8%, 가계보조비 8만원 등을 인상하고자 보수 규정을 개정함.
 - 보수 규정 개정 주요 내용
 - 직원 성과급제를 2023.03.01.자로 시행하고, 성과급여 대상자의 1호봉을 삭감(안 제14조)
 - 직원봉급 지급표 중 월기본급 0.8%인상(안 별표2)
 - 가계보조비 월 8만원 인상(안 별표10)
- 이에 대해 임원들이 숙의한 후 김종철 의장이 심의안건 제4호를 원안 승인하겠음을 묻자, 이에 대해 참석이사 7인 전원 찬성으로 원안을 승인·의결하다.

□ 사이버한국외국어대학교 보수 규정 승인사항

- 승인여부 : 원안 승인
- 시 행 일 : 2023년 3월 1일

붙임 : 사이버한국외국어대학교 보수 규정 신·구 대비표

간인(서명)	김종철		박정우
--------	-----	---	-----

(5) 한국외국어대학교 교육용 고정자산(차량운반구) 폐기(안)

- 김종철 의장 : 제5호 안건을 상정하고 보고를 요청함.
- 이태욱 법인사무처장 : 한국외국어대학교 서울캠퍼스 및 글로벌캠퍼스에서 교육용으로 사용중인 고정자산(차량운반구) 차량 3대를 노후화로 인해 폐기하고자 설명함.
- 이에 대해 임원들이 숙의한 후, 김종철 의장이 심의안건 제5호를 원안 승인 하겠음을 묻자, 참석이사 7인 전원이 찬성하여 다음과 같이 원안을 승인의결하다.

□ 교육용 고정자산 폐기 승인 목록

자산구분	등록(차량)번호	취득일	취득가액(원)	비고
차량운반구	01모5178	2004.03.11.	18,786,000	
	서울82루2660	2000.06.05.	8,236,150	
	서울83노9791	2001.05.18.	10,725,150	

(6) 교육용 기본재산(토지) 용도변경(안)

- 김종철 의장 : 제6호 안건을 상정하고 보고를 요청함.
- 이태욱 법인사무처장 : 학교법인에서 용인한국외국어대학교부설고등학교에 교육용으로 출연한 일부 토지(용인시 모현면 왕산리 282번지)는 당초 출연 목적에 따른 교육용 시설의 조성, 활용이 어려운 상황이며, 현재 재산세 등 제세공과금이 과세되고 있는 실정으므로, 자산관리의 효율을 도모하고, 관할청으로부터 설치학교에 대한 감사(고유목적 외 사용으로 인한) 지적을 받지 않도록 수익용 재산으로 용도변경 하고자 함을 설명함.
- 이에 대해 임원들이 숙의한 후 김종철 의장이 심의안건 제6호를 원안 승인 하겠음을 묻자, 참석이사 7인 전원이 찬성하여 원안을 승인의결하다.

* 붙임 : 교육용 기본재산(토지) 용도변경 승인사항

간인(서명)	김종철		이태욱
--------	-----	---	-----

(7) 학교법인 정관 개정(안)

- 김종철 의장 : 제7호 안건을 상정하고, 정관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설명함.
 - 학교법인 이사회 운영 및 학교 경영의 효율성 제고를 목적으로 이사 정수 및 개방이사 수를 변경하고자 함(안 22조, 24조의 3)
 - 학교법인 수익사업체 중 “(주)이지피에스” 및 “동원안전시스템(주)의 본점 소재지가 변경되었기에 정관에 반영함(안 제38조)
 - 학교법인 사무처에 재정 및 사업을 담당하는 전문인력을 별정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외부 전문가 영입을 보다 유연한 구조로 만들고, 이를 통해 향후 학교법인의 신규 수익사업 활성화 및 기본재산 수익률을 제고하고, 재정관리의 전문성, 투명성을 강화하고자 함(안 89조 제1항 등)
- 이에 대해 임원들이 숙의한 후 김종철 의장이 제7호 학교법인 정관 개정(안)의 원안 승인을 묻자, 참석이사 7인 전원이 찬성하여 원안을 승인·의결하다.

□ 정관 개정 승인사항

- 승인여부 : 원안 승인
- 시 행 일 : 2022년 12월 30일

* 붙임 : 학교법인 동원육영회 정관 신·구대비표

(8) 이사회 회의록 간서명 대상자 선임(안)

- 김종철 의장 : 제8호 안건을 상정하고 이사회 회의록 서명의 간소화를 위해 간서명 대상자로 김종철 이사장, 박정운 이사, 윤규섭 감사를 선임하겠음을 발의하자, 참석이사 전원 찬성으로 승인·의결하다.

간인(서명)	김종철		박정운
--------	-----	---	-----

나. 보고사항

(1) 한국외국어대학교 2022년 단체협약 관련 보고

- 김종철 의장 : 보고사항 제1호를 상정하고 보고를 요청함.
- 김봉철 행정지원처장 : 한국외국어대학교 직원노동조합과의 2022년 단체협약 관련하여 지난 이사회회의 문의사항에 대하여, 공가부여 관련 근거, 장기근속휴가 사용 근거, 성과급제 폐지 관련 사유 및 예산절감, 학자급 지급 대상자 확대 등에 대하여 보고함.

(2) 수익용 기본재산 사방사업 토지사용 승낙 요청 보고

- 김종철 의장 : 보고사항 제2호를 상정하고 보고를 요청함.
- 이태욱 법인사무처장 : 학교법인 동원육영회 수익용 기본재산인 강남구 자곡동 산46-43(LH강남 5단지 뒤편 대모산)내 5,830㎡에 대하여 호우 피해지 복구 및 산사태 예방 사방사업을 위한 강남구청의 토지사용 요청에 대하여 보고함.
 - 학교법인은 사방시설이 설치될 경우 향후 재산권 행사에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어 협의 요청한 면적을 강남구에서 매입 또는 공시지가를 고려하여 토지 사용료를 부담해 주기를 희망한다는 의사를 전달했으나,
 - 강남구청은 2022. 12. 8.까지 토지 사용 승낙이 없을 경우 산림보호법 제45조의 8에 따라 산사태 발생지에 예방시설 설치를 위한 목적으로 산사태취약지역으로 지정하고 사방사업을 진행하겠다는 공문을 보내왔음.

(3) 수익사업체 민원 검토 결과 보고

- 김종철 의장 : 보고사항 제3호를 상정하고, 수익사업체에서 제기한 민원에 대해 소위원회를 통해 검토한 결과, 「학교법인이 직접 사실관계를 규명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아 민원을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였음」을 보고함.

간인(서명)	김종철		이태욱
--------	-----	---	-----

- 이어 다른 의견이 없음을 확인하고 김종철 의장이 2022년 제11차 이사회 폐회를 선언하다.

2022년 12월 30일

학교법인 동원육영회	이사장	김종철	(서명) 김종철
	이사	김동건	(서명) 김동건
	이사	김호정	(서명) 김호정
	이사	박정운	(서명) 박정운
	이사	양인집	(서명) 양인집
	이사	이돈구	(서명) 이돈구
	이사	최맹호	(서명) 최맹호
	감사	배한영	(서명) 배한영
	감사	윤규섭	(서명) 윤규섭

간인(서명)	김종철		박정운
--------	-----	---	-----

(붙임)

한국외국어대학교 교원 임용 승인 명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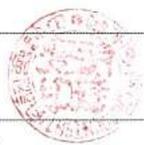
1. 재임용

가. 정년트랙 및 HK교원(내국인교원)

(이상 8명)

나. 특성화트랙(내국인교원)

(이상 12명)

간인(서명)	김정현		이정호
--------	-----	---	-----

다. 위키인용문

간인(서명)	김정철		유정수
--------	-----	---	-----

(이상 49명)

간인(서명)	김정숙		이정우
--------	-----	---	-----

2. 승진임용

가. 내국인교원

(이상 10명)

나. 외국인교원

(이상 2명)

3. 고속승진

(이상 8명)

간인(서명)	김정호		박정은
--------	-----	---	-----

4. 조기정년보장

(이상 1명)

5. 해임

가. 내국인교원

(이상 11명)

간인(서명)	김정철		박정호
--------	-----	---	-----

나. 외국인교원

(이상 10명)

간인(서명)	김정현		박재호
--------	-----	---	-----

(붙임)

사이버한국외국어대학교 교원 임용 승인 명단

1. 재임용

2. 해임

간인(서명)	김정현		이정호
--------	-----	---	-----

(붙임)

사이버한국외국어대학교 성과급제 규정

제1장 총칙

제 1 조 (목적) 이 규정은 사이버한국외국어대학교 성과급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 (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성과급제”라 함은 직원의 능력과 업무수행 결과, 대학에 대한 공헌도를 평가하여 연 단위로 성과급여를 정하여 지급하는 제도를 말한다.
2. “성과급여”라 매년 정기평가에 의해 지급받는 추가 임금액을 말한다.

제 3 조 (적용 대상) 이 규정은 사이버한국외국어대학교 정규직 직원에게 적용한다.

제 4 조 (정기평가 기간) 직원의 성과급여 책정을 위한 정기평가 대상 기간은 당해연도 1월 1일 부터 12월 말일까지로 한다.

제 5 조 (평가원칙) 직원의 성과급여를 결정하기 위한 정기평가는 ‘직원근무성적평정시행지침’에 따름을 원칙으로 하고 정기평가 기준은 공정하고 합리적인 방법으로 설정하여 평가해야 한다.

제 6 조 (비밀유지) 직원 및 급여담당자는 자신 또는 다른 직원의 성과급여액을 타인에게 누설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제2장 성과급여 책정 및 지급

제 7 조 (성과급여의 책정) ① 성과급여 총액은 최초 시행 학년도 성과급제 적용 대상 직원 1호 봉 차액의 총액으로 한다.

② 대학은 정기평가를 통해 직원의 능력, 근무성적 및 업무성과 등을 평가하여 성과급여를 책정한다. 단, 최초 시행 시 성과급여, 평가등급, 평가지표, 인원비율은 총장이 별도로 정한다.

제 8 조 (성과급여의 지급) ① 성과급여는 정기평가 결과에 따라 직원별 차등 지급한다.

② 직원의 성과급여는 정기평가 대상 기간 차년도 2월 급여 지급일에 지급한다.

③ 신규 정규직 임용자 및 당해 연도 3월 1일 이후 퇴직자는 학년도 기준 근무월수로 월할 계산하여 성과급여를 지급한다.

제3장 성과급여 통지 및 이의신청

간인(서명)	김정철		박정우
--------	-----	---	-----

제 9 조 (성과급여의 통지) 대학은 본 규정 제 7조에서 책정된 성과급여를 직원에게 통지한다.

제 10 조 (이의신청) 직원은 통지된 성과급여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 성과급여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의 이의신청 기간 동안 이의신청사유와 근거를 첨부하여 주관부서에 이의 신청을 할 수 있다.

제 11 조 (이의신청 심의) 인사부서장은 이의신청 기간 종료 즉시 성과급여 책정근거를 검토하여 10일 이내에 심의결과를 직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단, 동 기간 내에 심의가 어렵다고 판단될 때에는 심의기간을 1회에 한하여 연장할 수 있다.

제 12 조 (성과급여 동의) 직원이 성과급여 이의신청 기간 중 이의신청을 하지 않을 경우 대학 성과급여 통지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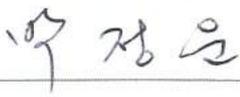
제4장 기타

제 13 조 (보칙)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총장이 별도로 정한 기준을 적용한다.

제 14 조 (규정의 개정) 이 규정의 개정은 총장의 제청으로 이사장의 승인을 받아 개정할 수 있다.

부 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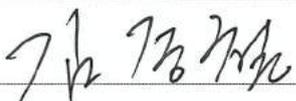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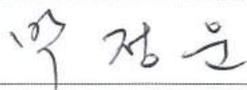
(1) (시행일) 이 규정은 2023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간인(서명)			
--------	---	---	---

(붙임)

사이버한국외국어대학교 보수 규정 신·구 대비표

현행	개정	비고
제1조 ~ 제3조 (생략)	제1조 ~ 제3조 (현행과 같음)	
제4조 (봉급) 교직원의 봉급은 그 자격과 경력에 따라 산정된 호급의 본봉액과 연구보조비로 한다. 1. (생략) 2. <u>직원 봉급지급표 <별표 2></u> 3. ~ 5. (생략)	제4조 (봉급) 교직원의 봉급은 그 자격과 경력에 따라 산정된 호급의 본봉액과 연구보조비로 한다. 1. (현행과 같음) 2. <u>직원 봉급지급표 <별표 2></u> 3. ~ 5. (현행과 같음)	별표 수정
제5조 ~ 제10조 (생략)	제5조 ~ 제10조 (현행과 같음)	
제11조 (제수당) 총장은 교직원에게 다음과 같은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1. ~6 (생략)	제11조 (제수당) 총장은 교직원에게 다음과 같은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1. ~ 6. (현행과 같음) 7. <u>성과급여</u>	호 신설
제12조 ~ 제13조 (생략)	제12조 ~ 제13조 (현행과 같음)	
<신설>	<u>제14조 (성과급여) ① 2023년 3월 1일자로 정규직 직원을 대상으로 성과급제를 시행하고 1회에 한하여 대상자의 1호봉을 삭감한다.</u> <u>② 성과급제 시행 이후 정규직 전환자는 정규직 전환 시 1호봉을 삭감하고 성과급제를 적용한다.</u> <u>③ 성과급제 지급에 관한 사항은 별도 '성과급제 규정'에 의한다.</u>	조항 신설
제14조 ~ 제15조 (생략)	제15조 ~ 제16조 (현행과 같음)	조 번호 순연
부칙 <신설>	부칙 <u>(20) (시행일) 이 규정은 2023년 3월 1일부터 개정 시행한다.</u>	부칙 신설
<별표 2> 직원봉급 지급표	<별표 2> 직원봉급 지급표	월기봉급 0.8% 인상

간인(서명)			
--------	---	--	---

현행	개정	비고
<별표 10> 가계보조비 및 교육훈련비	<별표 10> 가계보조비 및 교육훈련비	가계보조비 8만원 인상

간인(서명)	김정현		박재승
--------	-----	---	-----

(붙임)

교육용 기본재산(토지) 용도변경 승인 내역

1. 용도변경 물건

구분	소재지 (경기도 용인시)	지목	면적(㎡)	공시지가액(㎡)		용도		용도변경일
				2018	2022	현행	변경	
토지	모현읍 왕산리 282	답	2,264	152,200	209,500	교육용 기본재산	수익용 기본재산	교육부 승인후 변경

2. 용도변경 사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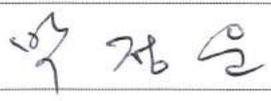
- 2019년 4월 9일 이사회 심의를 통하여 학교시설 내 미매입 5필지 7만4천여평의 소유권자인 왕곡영일정씨 대장공파 종중의 민원제기 및 학교시설에 대한 장기 미매입 사유지에 대한 적극적인 민원 해결을 목적으로 상기 토지를 법인회계를 재원으로 매입한 후,
- 용인외대부고의 교육시설로 활용할 수 있도록 출연하였으나, 코로나 팬데믹과 고등학교 재정상황 등으로 인하여 해당 토지를 개발·활용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임.
- 이에 따라 출연한 교육용 기본재산을 수익용으로 용도 변경하여
 - 개발 및 임대 활동 등을 통한 수익사업을 전개하고,
 - 추후 인근 지역의 여건(인접도로 확장 등) 변화에 따라 활용 방안을 모색하고자 함.

간인(서명)	김정호		박재호
--------	-----	---	-----

(붙임)

학교법인 동원육영회 정관 신·구대비표

현행	개정	비고
제1조 ~ 제21조 (생략)	제1조 ~ 제21조 (현행과 같음)	
제22조 (임원의 종류와 정수) 이 법인에 다음의 임원을 둔다. 1. 이사 9인 (이사장 1인 포함) 2. 감사 2인	제22조 (임원의 종류와 정수) 이 법인에 다음의 임원을 둔다. 1. 이사 8인 (이사장 1인 포함) 2. 감사 2인	이사 정수 변경
제23조 ~ 제24조의 2 (생략)	제23조 ~ 제24조의 2 (현행과 같음)	
제24조의 3 (개방이사의 수) 개방이사의 수는 3명 으로 한다.	제24조의 3 (개방이사의 수) 개방이사의 수는 2명 으로 한다.	개방이사 수 변경
제24조의 4 ~ 제37조 (생략)	제24조의 4 ~ 제37조 (현행과 같음)	
제38조 (수익사업체의 주소) 주식회사이지피에스의 주사무소는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모현면 왕산리 783-5번지 , 동원안전시스템주식회사의 주사무소는 서울특별시 강북구 도봉로 188(미아동 미성빌딩)에 두고 , 주식회사외대어학연구소의 주사무소는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이문로 96-1에 둔다.	제38조 (수익사업체의 주소) 주식회사이지피에스의 주사무소는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모현읍 백옥대로 2412 , 동원안전시스템주식회사의 주사무소는 서울특별시 강남구 삼성로 82길 21에 두고 , 주식회사외대어학연구소의 주사무소는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이문로 96-1에 둔다.	수익사업체 주소 변경
제39조 제88조 (생략)	제39조 제88조 (현행과 같음)	
제89조 (법인 사무조직) ①이 법인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법인사무처를 두며, 처장은 부교수 이상 또는 부장대우 이상으로 한다 . ② 제1항의 법인사무처에는 부처장을 둘 수 있으며, 부교수 이상 또는 부장대우 이상으로 보한다. ③법인사무처에는 사무팀, 재무팀, 사업관리팀을 두며, 각 팀장은 과장 이상으로 보한다. ④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분장업무는 따로 규정으로 정한다.	제89조 (법인 사무조직) ①이 법인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법인사무처를 두며, 처장은 부교수 이상 또는 부장대우 이상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이와 별도로 재무 및 사업을 담당하는 처장을 별정직으로 둘 수 있다 . ②법인사무처에는 부처장을 둘 수 있으며, 부교수 이상 또는 부장대우 이상으로 보한다. ③법인사무처에는 사무팀, 재무팀, 사업관리팀을 두며, 각 팀장은 과장 이상으로 보한다. ④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분장업무는 따로 규정으로 정한다.	외부 전문인력 영입 근거 신설 자구 수정

간인(서명)			
--------	---	--	---

현 행	개 정	비고
⑤법인 직원의 임용 및 복무, 보수 등은 따로 규정으로 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대학교 규정을 준용한다.	⑤법인 직원의 임용 및 복무, 보수 등은 따로 규정으로 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대학교 규정을 준용한다.	
제90~132조(생략)	제90~132조(현행과 같음)	
	<p style="text-align: center;">부 칙</p> <p>(시행일) 이 정관은 2022년 12월 30일부터 시행한다.</p>	

간인(서명)	김정현		박정호
--------	-----	---	-----